■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4. 25.>

(앞쪽)

제 호

유원시설업 신고증

1. 영업소 명칭	
2.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대표자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수 (종 수)	
7.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뒤쪽)

신고번호 :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인]